

공고 제 225 호

당기 4291 년 10 월 20 일

시유 재산 (보통 재산) 매각절본 에 관한건 (제 3 회)

감재과

266

6-1

공 안 비 회 기



그대에게 양의 조로... 2000년 12월 10일

그대에게 양의 조로... 2000년 12월 10일

그대에게 양의 조로... 2000년 12월 10일

그대에게 양의 조로... 2000년 12월 10일

그대에게 양의 조로... 2000년 12월 10일

서... 2000년 12월 10일

不動產賣却入札公告

서울특별시공고제 222호

- 一 不動產表示 (財産目錄과 같은)
- 二 入札日時 檀紀四二九年 十月 三十日 午前 十時
- 三 入札場所 當市財務局管財課
- 四 入札方法 一般競入札에 依함

但 財産目錄中 適法으로 貸付받은 者 및 當市가 集團 移住承認한 者에 對하여는 優先買收權을 認하지 않

五 入札登錄

檀紀四二九年 十月 三十日 午前 三時까지

入札登錄 申請書를 當市 管財課에 提出함

六 優先買收者

入札登錄申請書와 同時 別途 優先買收權을 證 錄 磨勘日까지 提出함

但 優先買收權者가 入札에 參加하지 아니한 때에는 優先買收權을 拋棄한 것으로 看做함

七 入札保證金

入札金額 壹割 以上の 現金 또는 市中銀行의 保證 手票와 入札保證金의 三分 以上の 該當하는 國債消 化畢證을 納付함

八 賣買契約의 代金納付方法

落札者는 入札日로부터 五日 以内に 納稅畢證을 添 付하여 貳割 以上の 該當의 契約金 兩付와 同時 賣買 契約을 締結하고 殘金을 契約日로부터 三十日 以内 에 納付함

九 地上物撤去

賣却後 地上物撤去 補償 明渡等 訂하여는 一切 買收者의 責任으로 함

三 其他 詳細한 事項은 當市 管財課에 向議한 事

公告 제 222 호

十月 三十日

서울특별시 市長

